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6-8 / 전송 731-656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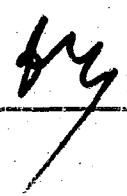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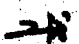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법무 11010-43

시행일자 1996. 3./3.

(경유) (제1안)

수신 내부전재

참조

취급		시	장
보존			
기획관리실장	전결		
법무 담당관			
법 제 개 장			
기안	김철수 		
		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아파트형공장설치·관리요령세부지침폐지지침 발령

1. 서울특별시아파트형공장설치·관리요령세부지침폐지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첨부 훈령안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시보게재

훈령제 834 호

1. 서울특별시아파트형공장설치·관리요령세부지침폐지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.

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834 호 2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3 안)

수신 경제진흥과장

제목 훈령발령 통보

1. 서울특별시아파트형공장설치·관리요령세부지침폐지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.

가. 발령예정일 : 1996. 3. 20.

첨부 서울특별시훈령 제 834 호 (생략). 끝.



서울특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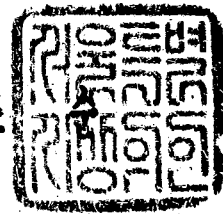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아파트형공장설치·관리요령새부지침폐지지침 을

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6년 3월 20일

서울특별시장

조



서울특별시아파트형공장설치·관리요령세부지침폐지지침안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아파트형공장설치·관리요령세부지침 (훈령 제711호, '90.9.7)을 공업배치법시행규칙 제10조 및 상공부고시 제90-16호에 의거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,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되어, 새 법률에 따른 고시 제91-30호의 부칙으로 종전 고시(제90-16호)를 폐지하였고, 대부분의 내용은 동 시행규칙으로 법규화되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세부지침을 폐지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아파트형공장설치·관리요령세부지침을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서울특별시아파트형공장설치·관리요령세부지침폐지지침안

서울특별시아파트형공장설치·관리요령세부지침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